

# 의료급여관리사 지원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의료급여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		
사업비 (당해년도)	2,531,582천원	(국비)1,265,791천원	(시비)1,265,791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희망복지지원과	김철수 2133-7370	유규용 2133-7387	류민국 2133-7390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1,265,791) 2,531,582	(x1,265,791) 2,531,582	(x-) 0
자치단체경상보조 금	(x-) 0	(x1,265,791) 2,531,582	(x1,265,791) 2,531,582	(x-) 0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,531,582,000원	=	2,531,582천원

### 3 사업 설명

**사업목적**

-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증진

**사업근거**

- 의료급여법 제5조의2

**사업내용**
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
- 규 모 : 의료급여수급권자 246,243명(2017. 12월말)
  - 1종 : 170,553명(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인간문화재, 북한이탈주민, 의사상자 등)
  - 2종 : 75,690명(기초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)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
- 총사업비 : 2,531,582천원
  - 재원분담비율 : 국비50%, 시비50%

**추진경위**

- 1997년 의료보호제도 시행
-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
- 2003년 5월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
  - 의료급여관리사 :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상담, 교육 등

**2018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531,582	
보조금 집행 및 정산	2018.01~2018.12	2,531,582	월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### 4 사업 효과

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5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4,363명
2016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5,719명
2017년도	○ 의료급여수급권자 246,243명(2017년 12월말)

□ **향후 기대효과**

-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